

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: 2003. 7.
제 출 자 : 구미시장

□ 개정이유

소득증대를 통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소득지원 융자금 이자를 경감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- 소득지원 기금 융자이자율 종전 5%를 3%로 금리를 경감시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있음
-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기간 연장시 연장기간 중 이자 면제
- 상환기간을 경과한 융자금에 연체이자 산출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수탁금융기관의 관례에 따라 적용 하였든 것을 조례로 명문화시켜 분쟁을 방지 시켰음

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“대부이율로 년 5%”를 “대부이율은 년3%”로 한다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시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기간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본문 중 “융자금”을 “융자금과 이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경과조치 등)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이자 중 2003년 10월 1일 이후부터 회수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.

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제5조제2항(융자한도 및 이율 등) 융자금의 <u>대부이율로 년 5%</u> 로 한다. 다만 생활안정기금의 대부이율은 무 이자로 한다.	제5조제2항(융자한도 및 이율 등) ----- <u>대부이율은 년3%</u> ----- ----- -----
(신설)	제5조제3항(융자한도 및 이율 등) <u>시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, 연장기간 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.</u>
제10조제2항(이자 및 연체이자)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<u>융자 금</u> 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 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. 다 만,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에 대하 여는 5%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.	제10조제2항(이자 및 연체이자) ----- <u>융자금과</u> <u>이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